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60

발의연월일: 2022. 8. 29.

발 의 자: 김용판·김학용·임병헌

이종성 • 박대수 • 박성민

강대식 · 김영식 · 서일준

박덕흠 • 유경준 • 양금희

정찬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일부터 2년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난도 심화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u>2024년 12월 31일</u>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	
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